

문서번호	DAOL리테일마케팅 제2025-002
시행일자	2025-04-25
수신	수신처 참조
참조	
제목	다올코스닥벤처, 다올코스닥벤처공모주 포커스 펀드 내 기 상각자산 최종상각 안내

-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당사에서 운용중인 펀드에서 보유한 기 상각자산을 다음과 같이 최종상각 처리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- 가. 해당펀드: 다올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다올코스닥벤처공모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- 나. 상각내역: 금융투자업규정제7-35조제3항에 의거,
(주)재플 보통주 및 CB를 약화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여, 아래와 같이
최종상각함

펀드명	종목코드	종목명	보유수량 25.04.24기준	상각 전 평가금액(원) 25.04.24기준	상각 후 평가금액 (원)
다올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KR7310740006	재플	56,000	4,256,000	0
다올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KR63107418B2	재플3CB	2,334,656,000	23,346,560	0
다올코스닥벤처공모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 [주식혼합]	KR7310740006	재플	45,984	3,494,784	0

* '23년 10월 5일 발행회사의 파산신청에 따라 채무증권의 경우 투자원금대비 99% 상각하고,
지분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대비 99% 상각하여 주당 76원으로 평가함. 금번 최종상각은
잔여평가금액 1%에 대한 전액 상각에 해당.

다. 상각평가 적용일: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영업일 기준가에 적용 (영업일 적용 기준)

라. 상각사유

- 해당 기업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잔여재산으로 재단채권의
변제금액 이하로 확인되어 파산의 폐지를 신청
- 파산관재인의 이시폐지에 따라 동 펀드가 보유한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
잔여재산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어, 당사는 집합투자위원회를
개최하여 해당 자산의 잔여평가금액(잔여 1%)을 전액 상각 처리.

마. 관련규정

- 자본시장법제238조제3항, 동법시행령제260조
- 금융투자업규정제7-35조
-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제18호

수신처: 경남은행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다올투자증권, 대신증권,
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아이엠증권, 우리은행,
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제주은행, 케이프투자증권, 키움증권,
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
DB증권, IBK투자증권, KB증권, LS증권, NH투자증권. 끝.

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

대표이사 사장 이창혁

